

“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”



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

KOREA RESOURCE-RECYCLING ENERGY MUTUAL-AID ASSOCIATION

수 신 전 조합원사 대표이사
[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]
참 조 법·제도 담당
제 목 일회용기저귀 사업장일반폐기물 분류에 따른 현황조사



1. 한공조-259호[「폐기물관리법」 하위법령 일부개정(안) 주요 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] 및 한공조-394호[「폐기물관리법」 시행규칙 일부 개정(안)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]와 관련입니다.

2. 환경부에서는 기존 의료폐기물인 비감염병환자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(폐설유류)로 분류하여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에서 '19.10.29부터 처리 가능토록 하는 「폐기물관리법」 하위법령 개정내용을 '19.10.22 보도자료로 발표하였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조합원사의 일회용기저귀 수집·운반 및 처리가능 여부 조사를 요구한 바, '19.10.30(수)까지 불임 양식에 따라 제출 (FAX : 02-718-7171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일회용기저귀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처리 허용 관련 수요조사 요청은 조합홈페이지(알림광장-공지사항)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붙 임 : 1. 환경부, 일회용기저귀 분류변경에 따른 처리 협조요청 1부.
2. 일회용기저귀 수집·운반 및 처리 가능여부 현황조사 작성양식 1부. 끝.

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



담당 오은석 팀장 한인성 사무국장 장기석 부이사장 김상배 이사장 박무봉
협조자

시행 한공조 2019 - 412호 (2019. 10. 29) 접수

우 04508 서울시 종로구 종로 50-1 13층(만리동1가, SKY1004빌딩)

/ www.krema.kr

전화 02-718-7900

전송 02-718-7171 / krema@krema.kr

/ 비공개

일회용기저귀 분류변경에 따른 처리 협조요청

□ 추진 배경

- 「폐기물관리법」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·시행(‘19.10.29~)에 따라 비감염병환자 일회용기저귀는 일반폐기물로 분류
 - 해당 기저귀의 처리방식 변경(의료소각장→일반소각장)으로 인한 업계 혼선 우려,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협의 추진

□ 주요 개정사항

-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는 ‘일반폐기물(폐섬유류)’로 분류되어, 전용 봉투에 배출, 냉장차량으로 운반, ‘사업장일반소각장’에서 처리

<「폐기물관리법」하위법령 세부 개정내용>

		기준	개정
시행령	분류	혈액, 체액, 분비물등이 함유된 일회용기저귀는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	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사환자, 병원체보유자의 것, 혈액이 포함된 것만 의료폐기물로 분류
시행규칙	처리방법	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(배출) 전용용기 배출·(보관) 보관일 15일(냉장보관시 30일) 이내, 별도 보관창고 또는 보관장소 보관 등·(운반) 전용 냉장차량으로 운반·(처리) 전용소각장에서 처리	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기저귀(일반폐기물)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(배출) <u>개별 밀폐포장하고, 전용봉투</u>(고시)에 배출·(보관) 보관일은 15일(냉장보관시 30일) 이내, 별도 보관장소, 보관장소는 주1회 소독·(운반) <u>냉장차량</u>으로 운반 (기저귀만 별도로 운반)·(처리) <u>일반소각장</u>에서 처리
업무요건	생략		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·운반업자가 기저귀를 운반하려는 경우 ‘냉장함을 적재한 차량’을 구비하여야 함 ※ 일반폐기물 중 ‘기저귀’만을 취급하는 경우 냉장차량만 갖추면 되도록 단서 규정

□ 협조 요청

○ 일회용기저귀 수거 및 처리 의사가 있는 업체 파악 요청

- (수집운반) 수집운반업을 함께 영위하는 회원사 대상으로, 일회용 기저귀 운반을 위한 냉장차량 구비 회원업체 파악요청
- (소각) '폐섬유류'를 영업대상폐기물로 하는 소각장^{*} 중 별도 운반업체 또는 자체 운반업을 통해 기저귀 반입 의사 있는 업체 파악요청

* 폐섬유류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득한 경우 별도의 변경허가 불필요

○ 일회용기저귀 수거 및 처리 협조 요청

- 계도기간(~'19.1.31) 중에는 기저귀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로 배출 및 의료폐기물 운반업체의 수집·운반을 허용할 예정인 바,
- 계도기간 만료 전까지는 전용용기·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운반되는 일회용기저귀 반입·처리 협조 요청
- 계도기간 이후는 전용봉투·일반냉장차량 운반 기저귀 반입·처리 협조 요청

<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(일반폐기물) 처리기준 적용 방침 >

구분		계도기간 중 허용 여부	계도기간 이후 허용 여부
배출	배출용기	○ 전용용기 사용(봉투형+상자형) ○ 전용봉투 사용(밀폐포장+봉투)	X O
	RFID 태그	○ 태그 부착 ○ 태그 미부착 (의료소각장 처리 경우 필수, 일반소각장 처리 경우 선택)	X O
보관	보관장소 및 방법	○ 의료폐기물과 혼합보관(보관장소 미확보) ○ 의료폐기물과 분리보관(보관장소 확보) X 일반폐기물과 혼합보관	X O X
		○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자 (냉장차량 보유)	O
		○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만을 득한자 (계약기간 만료시까지) ○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만을 득한자 (냉장차량 보유) X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만을 득한자 (냉장차량 미보유)	X O X
처리	처리업체	○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○ 사업장일반 소각업체	X O
		(계약기간 만료시까지)	O

일회용기저귀 수집·운반 및 처리 가능여부 현황조사

1 전 조합원사 대상

영업대상폐기물에 “폐섬유류” 포함 여부(O, X)	일회용기저귀 처리 계획 여부 (O, X)	처리 가능량 (톤/일)

※ “폐섬유류”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득한 경우 별도의 변경허가 불필요

2 조합원사 중 수집·운반업 보유 사업자 대상

냉장차량 구비 계획여부 (O, X)	구비예상 차량 용량 및 대수 (ex : 1톤, 2대)

※ 일회용기저귀는 냉장차량(4℃ 이하)으로만 운반해야 하며, 의료폐기물 운반 차량 외부 기준(흰색 차량, 의료폐기물 마크 부착) 미적용

2019.

업 체 명 :

담 당 자 :

연 락 처 :

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귀중